농림축산식품부	보도자료	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

2019년 8월 16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원예경영과 과 장 김형식(044-201-2251), 사무관 정현주(2261) / 제공일: 8월 14일(총 5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!

- 화훼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화훼산업법 제정으로 화훼산업의 새로운 도약 기대 -

《 주 요 내 용 》

◈ 「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정

○ **(추진경과)** 화훼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법이 **8월 2일 국회 본회의, 8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**되어 20일경 공포 예정

○ **(법 주요내용)**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·시행, 화훼산업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, **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**,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, 우수화원 육성, **재사용 화환 표시제** 도입 등

* 법률 구성 : 총 6장, 21조문

○ 관련 전문가, 단체, 지자체 등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법에 따른 **하위규정**(시행령, 시행규칙)을 **마련**한 후, **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**

❑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이개호, 이하 농식품부)는 **「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」**(이하 '화훼산업법') 이 8월2일 국회 본회의와 8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, 20일경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❑ 이번에 제정된 화훼산업법은 **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** ‘17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**의원 시절 대표발의**한 법률안이기도 하다.

❑ 화훼산업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5년마다 **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**하고, 화훼산업의 정확한 기초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**통계 작성과 실태조사**를 실시해야 한다.

○ 또한, 화훼생산이 규모화되고 화훼 관련 생산·유통·판매시설 등이 집적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**화훼산업 진흥지역**으로 **지정**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○ 아울러, 화훼의 **생활화, 이용 촉진**, **원예치료**나 **화훼를 활용한 교육** 프로그램 개발·보급 등을 통한 화훼 소비 촉진과 생활 속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정부가 **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**할 수 있도록 하고, **우수화원**을 **육성**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○ 무엇보다,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등이 해당 화환에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**‘재사용 화환 표시제’ 도입**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.

❑ 우리나라는 경조사 시 연간 약 700여 만개의 화환이 사용되고 있으며, 이중 20~30%가 재사용 화환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.

○ 이런 상황에서 **'재사용 화환 표시제'**는 재사용 화환인지 여부를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**국민의 알권리 확대, 화환 유통질서 개선**과 함께 **건전한 화환 문화 조성과 화훼 농가, 관련 업계 등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**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농가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재사용 화환의 **구체적인 표시사항과 표시방법** 등은 이해관계자 등과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 **하위규정 마련 시 규정**할 예정이며, 재사용 여부에 대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검증 기법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.

❑ 생산, 소비 등 전반적으로 산업이 위축된 상황에서, 관련법 제정으로 화훼산업 정책의 **제도적 기반이 마련**되어 모든 화훼인들은 **농가의 소득 증대, 화훼 관련 일자리 창출** 등 **화훼산업이 활력을 찾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**하고 있다.

* 생산액 : ('05) 10.1천억 → ('10) 8.5 → ('17) 5.6

* 수출액 : ('05) 52백만$ → ('10) 103 → ('17) 24 → ('18) 19

❑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 전문가, 단체, 지자체 등 **의견 수렴을 통해 하위규정(시행령, 시행규칙)을 마련**하고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도 마련하는 등 화훼산업이 **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**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.

참 고 **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 법 주요내용**

조문	주요내용
제 1장 총 칙	
제1조(목적)	○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
제2조(정의)	○ 화훼, 화훼산업, 화훼문화 정의 규정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)	
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	
제2장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	
제5조(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)	○ 정부(농식품부)는 5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
제6조(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)	○ 지자체(시도자사)는 5년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
제3장 화훼산업의 육성	
제7조(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)	○ 화훼산업 관련 통계 작성·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함
제8조(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)	○ 화훼 품종육성, 생산성·품질향상 기술개발, 화훼 이용 가공품 기술개발 등 추진
제9조(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)	○ 지역의 화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·도시사의 신청을 받아 화훼산업 진흥지역을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
제10조(생산·유통체계 개선)	○ 화훼의 생산기반시설 설치, 유통효율화 등 필요한 시책 추진
제4장 화훼문화의 진흥	
제11조(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)	○ 화훼문화의 진흥 관련 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
제12조(우수화원의 육성)	○ 화훼의 품질향상,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우수화원을 선정하고 마케팅, 교육활동 등 지원
제13조(교육훈련)	○ 소비자, 화훼산업종사자 등 대상 화훼 관련 지식·기술 등 보급·전수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
제14조(재사용 화환의 표시 및 고지)	○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,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·진열하는 자는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소비자 등에게 고지
제15조(재사용 화환의 거짓표시 금지 등)	○ 재사용 화환 거짓표시, 손상·변경 행위 등 금지
제16조(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 등)	○ 재사용 화환 표시 여부, 표시사항 등 적정성과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

조문	주요내용
제5장 보칙	
제17조(보고·검사)	○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에 대한 업무 보고, 검사
제18조(권한의 위임·위탁)	
제19조(청문)	○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실시
제20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	
제6장 벌칙	
제21조(과태료)	○ 재사용 화환 표시방법 위반자, 거짓표시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